

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7] <신설 2024. 6. 13.>

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(제55조의2제5항 관련)

- 표시 사항: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
- 표시 방법



○ 표시 기준

- ① 인증번호: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
- ② 종명: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
- ③ 인증기관명: 자생식물 종자 인증검사를 수행한 기관
- ④ 채취(생산)장소: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명 표시
- ⑤ 수량: kg
- ⑥ 발아율: %
- ⑦ 효율: %
- ⑧ 생산자: 생산자 또는 생산기관명
- ⑨ 채취(생산)년도: 4자리 년도
- ⑩ 유효기간: 월